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1

2023. 6. 14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1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정찬식)

가. 제안이유

○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 41명 → 39명(△2명)

○ 의회사무기구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 2명 → 4명(+2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직급별 정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증가(비용추계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5.4. ~ 2023.5.20.) 16일간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작성 제외 대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의 내용 중 <신·구별표대비표>와 같이 의회사무기구 총 정원 45명 중 6급 이하 일반직 2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별정직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일반직 행정7급 1명과 행정8급 1명을 각각 감원하고, 별정6급 1명과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직종과 직급의 변경만 있을 뿐 전체 정원의 증감은 없는 것임.

□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지방공무원법」제2조(정의)[1] 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기에

---

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이번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경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장직 비서진의 구성을 위한 인력 직종 변경으로 보임.

□ 참고로,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임용절차)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으며, 제12조(면직)에 의하면, 해당 별정직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 함께 면직된다.”함.

□ 의회사무기구 정원 내 직종과 직급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발생 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이 향후 5년간 2억11백만원 정도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1년이 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다소 지연된 사항이라할 것이며, 조직 및 정원 편성권은 구청장인 단체장 권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운영은 의회사무기구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 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 무 과

1. 제안이유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가.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 41명 → 39명(△2명)

나. 의회사무기구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 2명 → 4명(+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직급별 정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증가(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별표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5. 4. ~ 2023. 5. 20.(16일간) ※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작성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76	1,731			45
정무직		1	1	-		-
일반직	계	1,766	1,727			39
	2급	1	1	-		-
	4급	8	6	1	-	1
	5급	75	40	12	22	1
	6급 이하 소계	1,677	1,640			37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별정직	계	9	3	-		6
	5급상당	3	1	-		2
	6급상당 이하 소계	6	2	-		4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76	1,731			45
정무직		1	1	-		-
일반직	계	1,768	1,727			41
	2급	1	1	-		-
	4급	8	6	1	-	1
	5급	75	40	12	22	1
	6급 이하 소계	1,679	1,640			39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별정직	계	7	3	-		4
	5급상당	3	1	-		2
	6급상당 이하 소계	4	2	-		2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76	1,731			45
정무직		1	1	-		-
일반직	계	1,766 (△2)	1,727			39 (△2)
	2급	1	1	-		-
	4급	8	6	1	-	1
	5급	75	40	12	22	1
	6급 이하 소계	1,677 (△2)	1,640			37 (△2)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별정직	계	9 (+2)	3	-		6 (+2)
	5급상당	3	1	-		2
	6급상당 이하 소계	6 (+2)	2	-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회 정원 조정

2 정원의 변동 내역 : **별정6급 +1명**, 별정7급 +1명 /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Ⅱ. 비용소요 내역(2023년) : 증 40,561천원(6개월 환산 시 20,281천원)

1. 6급 : +1명(증 95,183천원)

<2023년 기준 연간비용>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95,183	
○인건비	75,529	※ 의회 6급 인건비 적용
- 기본급	52,656	4,388,000원×1명×12월=52,656,000원
- 정근수당	4,388	4,388,000원×1명×2회×50%=4,388,000원
- 정액급식비	1,680	140,000원×1명×12개월=1,680,000원
- 연가보상비	2,516	4,388,000원×1명×20일×86%×1/30=2,515,787원
- 시간외근무수당	9,023	12,531원×1명×12개월=9,022,230원
- 명절휴가비	5,266	4,388,000원×1명×2회×60%=5,265,600원
○물건비	2,220	
- 직급보조비	2,220	185,000원×1명×12월=2,220,000원
○이전경비	17,434	
- 성과상여금	4,856	3,184,045원×152.5%×1명=4,855,668원
- 연금부담금	7,235	80,383,375원×9%=7,234,504원
- 국민건강보험금	2,810	80,383,375원×3.495%=2,809,399원
- 연금지급금	2,533	80,383,375원×3.1502%=2,532,237원

2. 8급 : △1명(감 54,622천원)

<2023년 기준 연간비용>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인건비	54,622	※ 의회 8급 인건비 적용
- 기본급	26,844	2,237,000원×1명×12월=26,844,000원
- 정근수당	2,237	2,237,000원×1명×2회×50%=2,237,000원
- 정액급식비	1,680	140,000원×1명×12개월=1,680,000원
- 연가보상비	1,283	2,237,000원×1명×20일×86%×1/30=1,282,547원
- 시간외근무수당	7,317	10,162원×1명×12개월=7,316,640원
- 명절휴가비	2,685	2,237,000원×1명×2회×60%=2,684,400원
○물건비		
- 직급보조비	2,100	175,000원×1명×12월=2,100,000원
○이전경비		
- 성과상여금	3,430	2,248,805원×152.5%×1명=3,429,427원
- 연금부담금	4,053	45,474,077원×9%=4,052,401원
- 국민건강보험금	1,574	45,474,077원×3.495%=1,573,682원
- 연금지급금	1,419	45,474,077원×3.1502%=1,418,430원

Ⅲ. 5년간 비용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세입	시비						
	소계(a)						
세출	인건비	33,483	34,153	34,836	35,532	36,243	174,247
	물건비	120	122	125	127	130	624
	이전경비	6,958	7,097	7,239	7,384	7,532	36,210
	소계(b)	40,561	41,372	42,200	43,043	43,905	211,081
총비용(b-a) (구비 소요액)		40,561	41,372	42,200	43,043	43,905	211,081

※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은 1년 기준 금액을 산정, 월봉급액 인상률 최근 5년간 평균 2% 적용

Ⅳ.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명기 (☏ 02-3423-5176)